#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068

발의연월일: 2024. 7. 22.

발 의 자:한병도・박희승・임오경

서미화 · 서영교 · 박수현

박 정ㆍ이해식ㆍ이원택

김윤덕 • 윤건영 의원

(119]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적 장려사업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,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,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이후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하여 안정적인 성과 관리를 도모하고, 인구 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대응에 집중할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 로써 동 기금의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, 실효성 있는 지 방소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1항제3호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 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06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 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##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3호 중 "지역 역점시책 또는"을 "지역 역점시책, 「지방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28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 석의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또는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9조(특별교부세의 교부) ① 특	제9조(특별교부세의 교부) ①		
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			
에 따라 교부한다.			
1. •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		
3. 국가적 장려사업, 국가와 지	3		
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			
이 필요한 사업, <u>지역 역점시</u>	<u>지역 역점시</u>		
<u>책 또는</u> 지방행정 및 재정운	책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		
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	기본법」 제28조에 따른 지방		
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	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의 결		
정수요가 있을 경우: 특별교	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		
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	<u>대한 재정 지원 또는</u>		
당하는 금액			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		